

食品衛生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관보 제11391호(1989. 11.30)의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중 주요관련 조항만 발췌 告知
코저 한다.(편집자 註)

◎보건사회부령 제 835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9년 11월 30일

보건사회부장관 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품목제조허가 및 신고등) ① 법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품목제조허가신청서,
품목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
식의 품목제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
검토서(자가기준 및 규격대상품목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②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품목제조허가를 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품목제조허가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품목
제조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았
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그 품목의 제조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그 품목의 제조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품목제조중
단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품목제조허가사항등의 변경)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
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품목의 제품명·원재료·
성분배합비율 또는 성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품목제조허
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품목의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변경신고서에 변
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다만, 별표8 업종별시설기준3. 식품소분·판
매업의 시설기준중 업종별시설기준의 마. 식품자
동판매기영업의 시설기준(2) 내지 (4) 및 (7)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되
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
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1990년 3월 31일까지 제
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
는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중 제24조 및

별표9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대상품목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고 있던 품목중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 대상품목으로 된 품목은 1990년 6월 30일까지 당해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199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영업허가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는 1990년 6월 30일까지 매품목별로 제25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기간 및 그 기간설정사유서를 허가 또는 신고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 및 기준

구 분		표 시 기 준
2. 품목별 공통사항	가.식품및 첨가물	4)유통기한
		<p>식품은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가)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4호 활자이상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만의 포장 또는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6호 활자이상)의 크기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또는 각인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 부위를 명시하여야 한다.</p> <p>(다) 유통기한 표시는 「〇〇년 〇〇월〇〇일까지」 또는 「〇〇월 〇〇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p> <p>(라)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〇〇일까지」, 「제조일로부터 〇〇월까지」, 「제조일로부터 〇〇년까지」, 또는 「제조일시로부터 〇〇시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p> <p>(마) 도시락은 「〇〇월〇〇일〇〇시간까지」또는 「〇〇일〇〇시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p>